

레드리본센터의 주요 사업 ①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레드리본센터는 감염인에 대한 보다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와 필요기 커짐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퇴자와 에이즈 감염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여 나아가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레드리본에서는 이러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현재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후에는 그 첫번째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경선** 본회 인권복지팀장

재가복지지원사업의 개념

감염인 재가복지사업은 감염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감염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for the hiv/aids positive)로 정의된다. 저소득, 소외계층 감염인이 가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으로 재전파를 방지하며, 또한 건강감염인을 재가복지활동가로 양성하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사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가복지사업의 실천원칙

재가복지사업의 실천원칙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대상자 감염인용어이하클라이언트로 지칭한다.

① **욕구의 개별화**: 클라이언트는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각자는 자신만의 과거, 가족, 친구, 지식, 경험, 문제, 습관, 미래에 대한 바람과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기를 원한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하여 클라이언트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② **존엄성**: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가들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들의 존엄을 유지함은 물론 그들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자기결정**: 서비스 제공의 초기 단계인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서비스 관련 사항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참여**: 클라이언트가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⑤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및 기록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클라이언트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비밀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가의 입부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파악된 개인적인 정보는 기관의 내부와 외부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례 기록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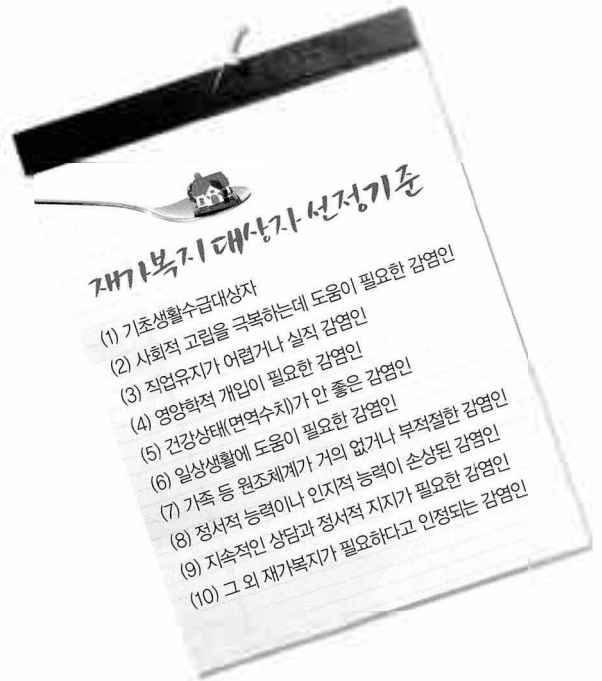
⑥ 독립성 유지 : 클라이언트가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⑦ 위기관리 : 불필요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닥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체대인 경우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집중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보호를 위협하는 요인, 예를 들어 쓰러짐, 질병의 악화, 학대, 안전사고의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재가복지 서비스 내용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클라이언트의 상태, 욕구, 상황 등에 따라 그 정도와 회수를 개별화하여 제공한다.

- ① **가사서비스** : 반찬전달, 생활용품전달, 청소, 식사 보조,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 ② **정서서비스** : 정서지지, 말벗되어주기, 전화상담, 책임어주기
- ③ **행정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신청업무 및 그 외 일반 행정업무, 금융업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차량지원 서비스, 타 기관의뢰 서비스 제공
- ④ **보건의료서비스** : 병원 동행, 복약관리, 가정용 상비약지원, 체온/맥박/혈압/복부계 체크



재가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2)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감염인
- (3) 직업유지가 어렵거나 실직 감염인
- (4) 영양학적 개입이 필요한 감염인
- (5) 영양학적 개입(면역수치)이 안 좋은 감염인
- (6)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감염인
- (7) 가족 등 원조체계가 거의 없거나 부적절한 감염인
- (8) 정서적 능력이나 인지적 능력이 손상된 감염인
- (9)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감염인
- (10) 그 외 재가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⑤ **후원결연서비스** : 후원물품이나 후원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연결
- ⑥ **기타 서비스** : 그 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 중 지원 가능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재가복지 서비스 전달과정

- ① **신청** :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다.
- ② **실태조사** : 대상자 선정기준에 직함한지 담당실무자와 재가복지 팀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③ **선정회의**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부장, 담당 실무자, 재가복지활동팀장이 대상자로 적합하지 선정회의를 실시한다.
- ④ **선정** : 회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 ⑤ **서비스계획** :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에 맞게 계획한다.
- ⑥ **서비스제공**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⑦ **평가**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실시하여 평가한다.